

#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48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19일  
발 의 자 : 김춘례, 김호진 의원(2명)  
찬 성 자 : 김인호, 조상호, 이승미,  
성흠제, 최기찬, 이영실,  
강동길, 최정순, 경만선,  
박기재, 문병훈, 안광석,  
노승재, 김소영, 이경선,  
김태호 의원(1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서울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브랜드위원회  
회를 구성·운영 중에 있으며, 현재 3기 위원회가 구성('18.8.29.)되어 운영  
중임.
- 향후 서울시 도시 브랜드의 꾸준한 관리와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 
자문 등 역할이 필요한 만큼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 
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브랜드위원회를 5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 
위원회 존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함.
- 따라서 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을 조례에 명시하고, 차기 위원 위촉 전에  
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.(안 제5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본문 중 “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~ ③ (생   략)</p> <p>④ <u>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 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